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 찬 원 의원)

의안 번호	402
----------	-----

발의연월일: 2021년 10월 15일

발 의 자: 박찬원 의원

찬 성 자: 이주용, 장문혁, 이명순의원

1. 제안이유

「평창군 건축 조례」와 관련하여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며, 도로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의 건축심의 요청에 따른 관련서류를 새로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위원회의 심의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기존 3가지 경우 외 제4호부터 7호까지를 추가 신설(안 제18조제1항)

나.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의 건축심의 요청에 따른 필요서류 규정(안 제18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입법예고 : 2021. 10. 05. ~ 2021. 10. 14.(9일간), 의견 없음.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1. 09. 29.~ 2021. 10. 01. 아래표 참조.

<p>조 례 안</p>	<p>제18조 (도로의 지정) ①----- -----.</p> <p>1. ~ 3. (현행과 같음) 4. 관계 법령에 따라 통행로로 허가를 얻은 부지 5.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하나뿐인 통로 6.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7.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 토지소재지의 주민대표(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등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주민)가 인정하는 통로 8. 이미 개설된 사실상의 농로 또는 임도(관계 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p> <p>② 군민은 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통로를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도로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p> <p>1. 건축심의 신청서 2. 현황측량성과도 3. 그 밖에 현황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증명자료</p>
<p>제 출 의 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호 삭제 -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전제조건과 중복 · 7호, 8호 삭제 - 건축법 제45조 제1항제2호의 전제조건과 상충 및 적용 기준 모호 · 제2항 삭제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이행하는 절차이므로 삭제
<p>의 회 의</p>	<p style="text-align: center;">[부분 수용]</p> <p>○ 안 제5호는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며</p>

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7호, 제8호 삭제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전제조건인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는 법상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상충될 사항은 아니나 해당 본문에 사실상의 통로를 기술하여 뜻을 명확히 함. ○ 안 제2항 삭제와 관련하여서는 안 제2항의 절차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절차와 달리 건축허가 또는 신고 이전 사실상 통로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절차로 원안 유지
---	--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8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부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계법령에 따라 통행로로 허가를 득한 부지
5. 같은 통행로를 이용하여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토지소재지의 주민대표(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등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주민)가 인정하는 경우
7. 이미 개설된 사실상의 농로 또는 임도(관계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군민은 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통로를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도로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건축심의 신청서

2. 현황측량성과도

3. 그 밖에 현황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증명자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 (도로의 지정) <u>법 제45조 제1항제2호</u>에서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u>”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 3.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제18조 (도로의 지정) ① <u>법 제45조 제1항제2호</u>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u>법 제2조 제1항제11호나목</u>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u>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관계법령에 따라 통행로로 허가를 득한 부지</u></p> <p>5. <u>같은 통행로를 이용하여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u></p> <p>6. <u>토지소재지의 주민대표(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등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주민)가 인정하는 경우</u></p> <p>7. <u>이미 개설된 사실상의 농로 또는 임도(관계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u></p>

<신 설>

② 군민은 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통로를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도로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건축심의 신청서
2. 현황측량성과도
3. 그 밖에 현황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증명자료

[관련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4.>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미터 미만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미터
35미터 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26조의4(도로관리대장 등)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의 폐지·변경신청서 및 도로관리대장은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박찬원 의원
연락처	(033) 330 -2502